

2025년 프리팁스(Pre-TIPS) 4차 창업기업 모집공고

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유망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예비 팁스(TIPS)기업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한 2025년 프리팁스(Pre-TIPS)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16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① 실명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- ② 실명등록 경로 : www.siren24.com (☎1577-1006)
- *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- * K-Startup 누리집 - 고객센터 - 온라인매뉴얼 - 일반매뉴얼 -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- 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「2025년 프리팁스」 '협약체결 협약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** :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(Seed)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(TIPS) 창업기업으로 육성
 - * 전체 지원규모를 지방소재 창업기업(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)으로 선발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
- 지원대상** :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비수도권 창업기획자로부터 총 5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비수도권 소재 초기창업기업
 - 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3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 - ** 투자 인정기준은 [참고4] 투자 인정기준 참고
- 협약기간** :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('25.12월 ~ '26.7월 예정)
- 선정규모** : 총 10개사 내외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(평균 91백만원)

*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

2 **지원내용**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(평균 91백만원)

구분	지원 세부 내용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제품 제작, 지적권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(평균 91백만원)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 **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은 신청자(기업)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• 총 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 * 자기부담사업비 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 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7천만원인 경우) 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 사업비</th> <th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</th> <th colspan="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 </tr> <tr> <th>현금</th> <th>현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%</td> <td>총사업비의 70% 이하</td> <td>총사업비의 10% 이상</td> <td>총사업비의 2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1억원 (100%)</td> <td>7,000만원 (70%)</td> <td>1,000만원 (10%)</td> <td>2,000만원 (2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 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현금	현물	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
총 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	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	
		현금	현물												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				
1억원 (100%)	7,000만원 (70%)	1,000만원 (10%)	2,000만원 (20%)												

3 **신청자격 및 요건**

□ **신청자격**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, 제2조제3호,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, 아래의 **요건①~③**을 **모두 충족**하는 기업

< 신청 세부 조건 >

▶ 신청가능 업력 : 2022년 10월 17일 ~ 2025년 10월 16일

-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 - 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을 보유한 경우,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(**참고 1**) **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**)
 - *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(개인, 법인)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

- **요건①** :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비수도권 창업기획자*로부터 총 5천만원 이상 투자(확약)받은 기업
 - *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 - ** 투자 확약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 선정 시,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(주금납입·등기)가 완료되어야 함
 - *** 신청시,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비수도권 창업기획자의 "투자사실 확인 및 추천서" 제출
 -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비수도권 창업기획자와 협력기관으로부터 총 5천만원 이상 공동투자(확약) 받은 기업도 신청 가능

< 협력기관의 종류 >

- ① 창업기획자(중소벤처기업부 등록)
-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탈(LLC 등 포함)
- ③ 기업형(중소·벤처기업 및 중견·대기업 등)
- ④ 글로벌 투자·보육 전문기관*
- ⑤ 기타(기술지주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)

*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(지사 등)이 있으며, 국내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 한하여 인정

- **요건②** :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소재 기업
 - * 협약기간 동안 해당 소재지에 잔류해야 하며,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명서로 소재지 사실 확인 예정
- **요건③** :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
 - * 모집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
 - ** 협약체결일 기준 근로자 2인 미만인 경우 협약 이후에도 제재될 수 있음

□ **신청 제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**

① **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**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**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**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**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(기업)**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**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(기업) ([참고 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**

⑤ **중소벤처기업부 '팁스 R&D' 또는 2025년 중소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*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(기업)**

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단, 공고사업과 '동일연도'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(계속 사업을 '25년에 협정한 경우 참여 불가)

*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([참고3] 참조)

⑥ **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**

⑦ **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 (기업)**

⑧ **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 (기업)**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- ⑨ 2025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- ⑩ 신청·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(기업)
- ⑪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⑫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창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□ **접수 기간** : '25. 10. 16.(목) ~ 10. 27.(월), 16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 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,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**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8:00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

□ **접수방법**

-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
–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**실명인증** 및 ② **기업 인증**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**

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
**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붙임 4]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②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 시**,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**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□ **제출서류**

- 사업계획서 1부

– [붙임 1] 양식을 활용하고,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기타 제출서류 각 1부

< 제출서류 목록 >

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① 사업계획서(붙임 1 양식)	PDF 파일 첨부	<p>온라인시스템(K-startup) 업로드</p> <p>※ 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'회사명.zip'으로 압축 후 제출</p> <p>* 제출서류의 용량 합계는 최대 30MB 초과 불가</p>
② 신청 기본사항	온라인 입력	
③ 사업신청서		
④ 개인정보 제공·이용·수집 동의 * 신청자 온라인 입력 / 과제참여자 양식 작성		
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	
⑥ 투자유치 관련 증빙서류 또는 투자 확약서 (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, 주주명부)	PDF 파일 첨부	
⑦ 투자사실 확인 및 추천서		
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	
⑨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(해당 시) * 공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경우		
⑩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	
⑪ 사업자등록증명원 (신청기업 외 다른 '계속'사업자 보유 시)	PDF 파일 첨부	
⑫ 휴·폐업사실증명원 (신청기업 외 다른 '휴·폐업'사업자 보유 시)		
⑬ 기타 가점 및 성과, 경력 관련 증빙서류 등 (해당 시)	PDF 파일 첨부 (가점 등* 해당사)	

* 가점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**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** ⑩~⑫ 서류는 공동(각자)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, 대표자별 서류 제출

**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존에 발급받은 '창업기업 확인서'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(단, 모집공고일 기준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)

5

평가 및 선정절차

□ **평가 절차** : 신청기업 요건·투자 검토,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창업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신청·접수	② 요건·투자 검토	③ 발표평가	④ 최종 선정
창업기업이 K-startup에서 사업 신청	요건 및 투자 적절성 검토 후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	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선정 확정 및 (협약체결확약서 제출)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
'25.10.16.~10.27.	'25.10월~11월 중	'25.11월 중	'25.12월 초

신청자(기업)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·협약 취소 처리 예정

* 선정규모의 1.5배수 내외 신청·접수 시, 서면평가 등 선정평가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

** 상기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평가 방법**

① **요건·투자 검토**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, 가점 등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확인 후, 투자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적절성 검토

② **발표평가** :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(가점 포함)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
* 평가시간 : 총 30분 이내 (발표 15분 내외 + 질의응답 15분 내외)

③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

* 선정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최종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>

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기업은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*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2025년 프리팁스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

※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됩니다.

※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
※ 제출한 '협약체결확약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－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「2025년 프리팁스」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
* 확약서 안내·교육(발표평가 대상자) → 확약서 배포(선정 예정자) → 확약서 수취

**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
－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 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
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－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**평가지표**

○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* 선정평가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발표평가 지표 주요내용 >

평가항목	세부 내용
문제인식	• 창업아이템 개발/개선 동기(문제인식), 목표시장 분석 등
실현가능성	• 창업아이템 개발/개선 방안, 고객요구 대응, 차별화 방안 등
성장전략	• 창업아이템 사업화 방안, 추진계획, 자금 조달계획 등
팀(기업) 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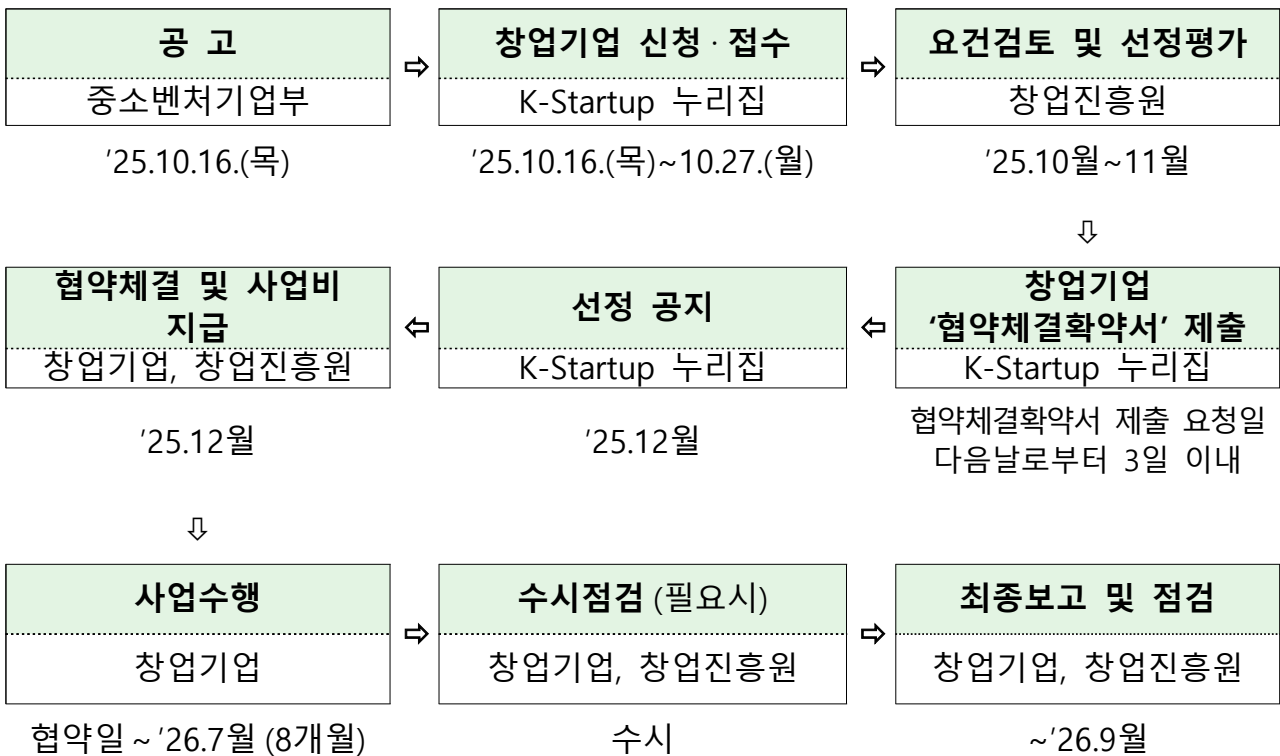
-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,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 기업에게 각 1점씩, 최대 2점의 발표평가 가점 부여

< 가점 항목 및 점수 >

가점 항목	점수	비고
1)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[붙임2 참조]	1점	최대
2)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	1점	2점

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◆ **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
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**

-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
* **창업진흥원 누리집(www.kised.or.kr) > 고객센터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**
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 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 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. 단, '25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 - 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후 공동·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'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 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창업진흥원에 신청 가능
- 창업진흥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의 선정 절차 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‘제외’ 처리됨
 -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(청년창업사관학교, 글로벌창업사관학교)에 이미 ‘협약체결확약서’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‘협약체결확약서’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‘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사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- 창업진흥원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’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- 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

기타사항

문의처

구 분	담당 기관	전화번호
사업 및 시스템 문의	중소기업 통합 콜센터	(국번없이) 1357
K-스타트업 누리집	www.k-startup.go.kr	

참고 1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
 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)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	불인정 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불인정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 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불인정 창업 불인정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창업 시	-	창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	불인정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 불인정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불인정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불인정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불인정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불인정	
	이종		창업	

- ※ 위 표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(창업의 범위)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,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 국가법령정보센터 : law.go.kr
- 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- 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신청가능 여부 : "창업여부"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
- ※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,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

참고 2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참고 3

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

연번	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예비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2	· 초기창업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3	· 창업도약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4	· 초격차 스타트업 1000+ 프로젝트	중소벤처기업부
5	·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(TIPS 사업화)	중소벤처기업부
6	· 통합 창업패키지 지원(특화창업패키지)	중소벤처기업부
7	· 창업중심대학	중소벤처기업부
8	· 재도전성공패키지	중소벤처기업부
9	· 신사업창업사관학교	중소벤처기업부
10	·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	중소벤처기업부
11	·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2	· 창업성공패키지(글로벌창업사관학교)	중소벤처기업부
13	·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4	·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	중소벤처기업부
15	· 예술기업 성장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6	·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·창업도약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7	· 스포츠산업 창업중기(엑셀러레이팅)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8	·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19	·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0	·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1	·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22	·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	문화체육관광부
23	· 관광벤처사업 공모전	문화체육관광부
24	·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	환경부
25	· 농식품 벤처육성지원	농림축산식품부
26	·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	방위사업청
27	·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(DATA-Stars)	과학기술정보통신부

참고 4

2025년 프리팁스(Pre-TIPS) 4차 창업기업 투자 인정 기준

구분	단독투자 (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창업기획자)	공동투자 (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창업기획자 및 협력기관)
투자 금액	5천만원 이상	5천만원 이상
투자 시기	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*	
투자 자원	고유계정형** 또는 펀드계정형***	
투자 형태	신주투자****	
주식 형태	보통주 또는 종류주식	
투자 후 지분율 (총 100%)	창업기업(대표 및 임직원 등) 지분 60% 이상, 창조경제혁신센터(협력기관 포함) 또는 창업기획자(협력기관 포함) 지분 30% 미만	
투자자 책임	창업기업 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보유 주식 매각 불가	

* 공동투자일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창업기획자의 투자금 납입일의 3개월 이내에 협력기관의 투자금 납입이 완료 되어야함

** 고유계정형 :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자원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민간자금으로 구성

*** 펀드계정형 : 모태펀드, 성장사다리펀드, 국민연금 등의 정부 및 지자체 자원이 포함된 자금으로 구성 (단, 펀드계정형일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어야 함)

**** 전환사채(CB), 조건부지분전환계약(CN) 등 조건부 사채의 경우 인정 불가